시행 3개월 지난 축산계열 화사업법 진단

"법을 초월한 믿음과 신뢰가 최우선"

박 정 완 기자
축산경제신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재 닭고기의 약 90%, 돼지고기의 20%가 계열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 같은 축산업의 계열화는 1990년부터 육계산업과 양돈산업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기업농과 전업농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와 규모화를 추진하고 중 · 소농에 대해서는 브랜드 경영체를 중심으로 조직화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축산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정부는 축산계열화 추진이 이러한 축산정책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축산계열화는 그동안 축산농가의 소득안정과 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축산계열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축산농가와 계열사 간 계약상 불공정 문제, 사육경비 및 원자재 품질문제에 관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했다. 따라서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할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요구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2월 22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계열화법)을 제정하고 지난 2월 23일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한 하위법령 과제

축산계열화법은 ▲농식품부장관이 축산계열화사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토록 해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농식품부장관이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가축계열화사업자와 공동으로 생산조정(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 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대등하고 공정한 계약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포함되는 필수사항을 규정하고 농식품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사육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계열화사업자 중에서 축산농가와의 상호협력 등에 모범적인 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상호 대등한 계약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약사육농가협의회와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를 설치토록 하고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했다.

축산계열화법은 즉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상호 거래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핵심이 되는 표준계약서와 사육원자재의 품질 및 사육시설 기준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어 법 집행의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다.

공정한 하위법령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생산자 대표조직인 대한양계협회는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중 병아리의 경우 운송 시 송장에 병아리 품종, 병아리를 생산한 부화장, 해당 종란을 생산한 종계장 및 종계의 주령, 종계의 법정전염병, 난계대 질병에 대한 항체 역가검사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료의 경우 사료공급 시 사료공급확인증에 열량 및 영양성분을 명시하고 주요 곡물의 포뮬러(배합비율)가 변동될 시 사전에 미리 통지해야 하고 사료법에 의거 사료검사를 실시해 사료의 수요자인 농가의 요청이 있을 시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고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계열화사업자의 대표조직인 한국계육협회는 현재 육계 생산 구조가 병아리 공

축산계열화법은 즉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상호 거래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핵심이 되는 표준계약서와 사육원자재의 품질 및 사육시설 기준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어 법 집행의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다.

급을 맡고 있는 종계업자, 사육을 맡고 있는 육계사육농가, 가공·유통을 담당하는 계열화사업자로 구성돼 있는 실정으로 병아리 품질 문제는 종계업계와 합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양계협회의 주장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계육협회는 또한 사육기자재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사육시설 환경이 육계사육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계약사육농가의 사육시설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도 고시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장관 고시 개정의 시급함을 인지하고 있지만 양계협회와 계육협회의 입장이 대립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축산계열화법 집행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장관고시 제정은 절실하다. 따라서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조금만 더 이해하고,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하루 속히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공존공생을 위한 신뢰 구축이 관건

축산계열화법이 농가와 계열사 상호 간 갈등을 줄이고 상생·협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법이 제정됐다고 모든 갈등과 분쟁이 해결돼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축산계열화법은 공평하고 올바른 축산계열화를 위한 하나의 계기나 조건이 될 뿐이다. 법을 초월한 믿음과 신뢰가 더욱 중요하다.

지금까지 농가와 계열화사업자와 소통부재로 서로 간 상처를 준 경우가 많았지만 분쟁해소의 길잡이가 될 축산계열화법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공존공생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한다.

축산계열화법을 계기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